

언론침해의 원인별 유형

오인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언

제목을 질문의 형태로 바꾸어 보면, 언론보도로 인해 누구의 어떤 인권이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침해되느냐를 알아보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러 편의 학술논문과 의견개진에 접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보도와 인권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누구의 인권이냐는 측면에서는 보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특정 개인의 인권 또는 특정 집단의 권익이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기사를 정하는 독·시청자들, 일반 시민들, 대다수 국민들의 권익에 관해서는 그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개는 끝나고 있었다.

어떤 인권이냐는 측면에서는, 협의의 인권인 인격권 즉 명예훼손과 사생활비밀권침해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광의의 인권¹⁾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권²⁾에 관해서는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그를 다룬 글들은 최근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았다.

보도 속에 등장되는 사람 또는 집단의 명예권과 사생활권에 관한 이해관계가 문제로 제기되느니 만큼, 이들 권익의 침해원인으로 허보와 오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허보와 오보가 아니면서도 인권침해로 여겨져 문제시되는 경우에도 많은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허보와 오보는 사실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기자가 속일 의도가 있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썼을 경우를 허보라 보고, 속일 생각이 없이 쓴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을 경우를 오보로 규정하는 것 같았다. 인권이나 익을 침해당한 측에서 보면 기자의 의도야 어떠했던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면에서는 허보나 오보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언론보도와 인권침해, 및 그 원인에 관해서는 이미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오고 있었고, 중요한 요인들이 모두 지적되고 있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다만, 이 문제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만큼, 되풀이해 강조되어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이 글에서는 그간에 이미 언급된 사항들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서, 이 글을 읽게 될지도 모를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가 갖는 의미를 재음미해 보고자 한다.

II. 사실, 보도, 해석

그 어떤 현상이 있어, 인간이 그것을 인지·지각하게 될 경우, 인간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인지와 지각은 부수적일 수 밖에 없고, 그런 뜻에서 인지 지각된 현상은 존재하는 현상과는 똑같을 수가 없다. 인지된 현상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말과 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된 현상과 언어로 표현된 현상간에도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극단론을 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언어로 그 어떤 현상을 사실 그대로 기술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며, 이런 뜻에서 언론보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오보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에서의 오보는 언론인들에게 아무리 많은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강조하더라도 극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사의 취재 및 보도 과정,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오보의 요인들을 가능한 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일이며, 이것은 훈련의 강화와 윤리성의 제고를 통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안목을 넓히고, 그 균형을 잡고, 대상분야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 이는 취재에 임하는 제일보로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기자는 취재에 나선다. 기자가 사건발생과 진행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들에게 물어서 간접취재가 되게 마련이다. 여기 오보의 요인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 마감시간에 쫓기거나 귀찮아서 적당히 다루게 될 때 오보 연쇄반응의 발단이 되기 쉽다. 훈련을 쌓음으로써 성실히 임함으로써 이런 경우 오보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취재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언어 구사력도 중요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윤리의 문제가 그보다 더 중요해지는 단계가 바로 이 시점이 된다. 언론인들로 하여금 직업윤리를 확립하도록 역설하고 도와줌으로써 이 단계에서의 오보 또는 그보다 더 큰 문제성이 갖는 허보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사가 편집과정에 들어가면, 다른 기사들과 중요도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비중이 다소 적다고 판단되거나 지면사정때문에 끝부분이 잘리게 될 수도 있다. 필요하다고 믿어져 써놓은 것인데 일부가 잘리게 되면 균형이 깨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과장과 왜곡이 스며들 가능성이 높게 된다.

표제가 붙여지게 된다. 내용을 크게 압축해야 하고 양자들의 주목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차례 크게 과장될 여지가 많다. 이것 역시 훈련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정도 극복할 수가 있다.

신문이 인쇄돼 독자에게 전달되고,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시청자들에게 방송되고 나면 그 메시지가 기자와 프로듀서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지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독·시청자들은 자기의 경험과 입장에서 보도를 이해·해석하게 마련이며, 그 경험과 입장이 보도물을 만들어낸 사람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측면까지를 고려에 넣고 기사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책임이 언론인들에게는 있다.

III. 언론보도와 인권침해간의 관계유형

1. 사실보도와 인권침해

보도내용에 등장하는 특정인물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때 전제되고 있는 가정은 허보나 오보로 인해 등장인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보도가 미칠 수 있는 피해에 관해서는 논외로 되어있는 것 같다. 일부 특수한 경우 즉 미성년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욕을 본 부녀자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그들을 지목할 수 없는 사항들, 예컨대 본명과 실제주소 등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인권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보도내용의 사실성 여부와 등장인물의 피해여부의 두 차원을 결합시켜 보면 <표 1>과 같이 여러가지 경우를 논리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表 1〉

		보 도 의 성 격		
		사실	부분 사실	허위
등 장 인 물 에 게	피 해	I	II	III
	피해·이득 반반씩 또는	IV	V	VI
	모 두 있 음			
	이득	VII	VIII	IX

(표 1)에서 III 과 IV 칸은 방금 언급이 된 경우로서, 일단 수궁이 간다. 인권침해문제와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것은 I 과 IX 칸으로 생각되며 사실보도가 피해를 주는 경우와 허위 보도가 이득을 주는 경우에 관해서도 논의해 봄 직하다.

2. 기자의도와 인권침해

언론인의 입장에서 허보와 오보를 구별짓는 기준은, 기자가 의도적으로 꾸며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을 경우를 허보라 하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쓴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를 오보로 보고 있다.

기자가 의식적으로 꾸며서, 쓸 때도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그 의도가 호의적인 경우고 바른 하나는 악의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기자측의 의도에 관한 차원은 우선 의도가 호의적일 때, 악의적일 때 그리고 그런 뚜렷한 의도가 없을 때의 3개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자의도의 차원과 등장인물 피해의 차원을 결합시켜 보면 논리적으로는 (표 2)에서와 같이

		기 자 의 의 도		
		호의	무의도	악의
등 장 인 물 에 게	피해	I	II	III
	피해·이득 반반식	IV	V	VI
	모든 무 음			
	이득	VII	VIII	IX

(표 3)은 기자가 의도하는 차원과 독·시청자가 이해하는 차원을 결합시켜 본 것으로서, VII 과 III 칸의 경우에서와 같이 두 차원간에 괴리현상을 일으키는데 어떤 요인 또는 상황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表 3〉

		기 자 의 의 도		
		등 장 인 물 에 게		
		유리	중립	불리
독 · 시청자의 이해	등장인물에게	I	II	III
	중립	IV	V	VI
	불리	VII	VIII	IX

(표 2)와 (표 3)에서, 보도기사속에 등장되는 인물에게 피해가 있느냐, 유리하냐는 차원이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개념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해가 있다 없다는 판단이 등장인물의 주관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독·시청자의 이해에 의한 객관적인 것일 수도 있다. 피해의 차원을 (표 1)과 (표 2)에서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분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 (표 3)에서는 객관적인 피해를 분화시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주관적 피해와 객관적 피해

피해의 차원을 바로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사속 등장인물의 주관에 의한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책보기 표 49)

〈表 4〉

		주 관 적 차 원		
		피 해	무피해 무이득	이 득
객 관 적 차 원	피 해	I	II	III
	무피해 무이득	IV	V	VI
	이 득	VII	VIII	IX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I 칸에 속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평가에 입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득을 본 경우가 VII 칸에 속한다.

피해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나, 당사자의 피해주장이 있을 때 이를 가늠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일이 될 것 같다.

5. 등장인물과 독·시청자

위에서는 피해자가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등장인물의 경우만을 논의했다. 보도기사에 관련되는 것은 등장인물만이 아니다. 기자도 있고 그 기사나 보도에 접하는 독·시청자 즉 국민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여기서는 독·시청자 차원에서의 피해여부와 관련시켜 보고자 한다.

(表 5)

		등 장 인 물 예 계		
		피 해	무피해 무이익	유 익
독·시청자 (국민) 에게	피 해	I	II	III
	무피해 무이익	IV	V	VI
	유 익	VII	VIII	IX

(표 5)에서 보면, 등장인물에게도 이롭고 국민에게도 이로운 기사(IX 칸), 또는 등장인물에게는 피해가 있으나 국민에게는 이로운 기사(VII 칸)가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등장인물에게는 이로우나 국민에게는 피해가 가는 보도(III 칸)와 등장인물이나 국민에게 모두 피해를 주는 보도(I 칸)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도를 위한 기사를 씬에 있어 어느쪽 차원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는 등장인물이 사인이나 공인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사인인 경우에는 등장인물에게의 피해여부를 보다 크게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등장인물이 공인일 경우에는 등장인물 쪽에 대한 고려 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의 이들에 보다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 같다.

5. 사실과 진실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결백하다」고 말했다고 하자. 신문이나 방송에서 『갑은 자기가 결백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면, 이는 사실보도가 옳다. 그러나 갑이 거짓말을 했을런지도 모른다. 만약 갑의 말이 거짓말임을 기자가 알고 있다면 『갑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보도해야만 진실보도가 된다.

위 5까지의 논의에서는 사실보도는 즉 진실보도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그것이 동일차원이 아니라 두개의 서로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전제가 서 있다.

왜곡하는 방법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서 하는 방법(commission)과 사실을 이야기 안함으로써 하는 방법(omission)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실 가운데 일부는 말하고 일부는 빼고 기사를 썼을 경우 이는 사실보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진실보도는 될 수 없다. 빼버린 사실이 관련성이 크고 비중이 큰 것일수록 그 보도는 진실에서 먼 것이 된다.

(표 6)은 사실과 진실의 양차원을 결합시켜 보도의 유형을 만들어 보았다.

(表 6)

		사 실 의 차 원	
		사 실 임	사 실 아 님
진 실 의 차 원	진 실 임	I	II
	진 실 아 님	III	IV

칸 I은 사실보도이면서 진실보도인 경우로써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칸 IV는 사실이 아닌 보도가 진실도 아닌 경우로서 당연한 경우이다.

언론인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사실보도이면서 진실보도는 아닌 경우(칸 III)가 아닐까 생각된다.

칸 II는 문학작품 또는 소설로 이름짓는 편이 보다 적절할런지 모른다.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못되지만, 워싱턴 포스트지 쿠키기자의 마약중독 소년에 관한 『지미의 세계』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아이는 없었지만 그런 현상은 오늘날 미국의 상황에서 진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허보의 개념을 규정할 때 기자의 의도적인 측면을 중시해, 기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썼을 경우를 허보라고 보았다.

그러나 허보는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6)에서 보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보도 즉 칸 IV에 해당하는 보도가 허보가 된다.

III. 언론보도와 인권침해

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이 스스로의 허보를 인정해 자기네 매체를 통해 허보였음을 공표한 일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만 오보는 이따금 자인해 이를 바로잡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6개 중앙지가 지난 6월중에 낸 정정보도는 총 5건으로서 A지가 2건, B지, C지, D지가 각기 1건씩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인명에 착오가 있어서 바로잡은 것이 2건, 직명이 잘못되어 정정한 것이 1건, 지명의 착오를 고친 것이 1건, 명칭이 잘 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 1건이었다.

등장인물들의 기분을 다소간 언짢게 했을런는 모르나, 그런 뜻에서 심리적으로 다소의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인권의 침해로까지는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신문과 방송이 자인하지 않는 허보나 오보가 자율기관인 신문윤리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속에 나타난다.

신문에 국한시켜 지난 6월중의 경우를 보면 기사부분에서 7개지와 1통신이 일련의 사건기사에서 「미성년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공개」 또는 「미성년자의 성명이나 주소공개 뿐 아니라 범인의 형의 이름도 공개」 또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인의 형, 어머니, 누나의 성명을 공재」 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경고를 받았거나, 2개지가 「사건과 관련없는 범인의 친척의 성명을 공개」 했거나 「미성년자의 성명을 공개」 했다는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소설과 광고부문에서는 성과 관련된 묘사 또는 표현에서 너무 직설적이라는 이유로 공개 또는 비공개경고를 받고 있다.

허보나 오보 때문이 아니고 사실보도인데 미성년보호의 정신을 어겼거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때문에 경고를 받은 것 뿐이었다.

허보나 오보가 표면화되는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처리과정에서 있다.⁴⁾ 6월중 7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었는데 방송과 신문이 관련된 것이 각각 3건씩이고 잡지가 관계된 것이 1건이었다.

이들 신청인들은 각기 자기네들에 관한 기사와 보도가 허보와 오보였으며 그로 인해 명예 또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중 3건이 합의가 성립되어, 즉 허보나 오보 임이 판명되어 정정기사나 새로운 기사의 형태로 취급, 잘못을 시정키로 되었다.

당사자가 없거나 또는 있으면서도 그 어떤 이유에서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의 허보와 오보는 언론인들 자신의 노력과 제삼자의 지적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

최근 마당 지에 실린 우리나라 신문의 『오보와 날조의 사례연구』⁵⁾는 그 좋은 예의 하나이다. 오보의 본보기로 38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사건 또는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범죄사건의 경우 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단도 오판일 수가 있다. 하물며 사건 발생초기에 나타난 몇 가지 사항만을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되는 만큼 그것이 오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다. 정확성의 원칙을 중요시해서 사건의 경위가 완전히 판명되고 난 뒤에 보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또다른 중요원칙인 신속한 보도가 희생되게 된다.

기자의 인간적인 측면이 과장을 낳고 그것이 꼬리를 물어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자라면 누구나 자기의 기사가 크게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실제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극적인 표현을 하게도 된다. 폭력에 버틸 수도 있고 굶힐 수도 있으며, 강자를 비호할 수도 있고 약자편에서 정의감을 불태울 수도 있다. 자기자신과 가족의 이익이 앞설 수도 있고 사회와 국가의 이익이 중요할 수도 있다. 기자들이 이런 속성을 초월할 때 허보와 오보가 사라질 수 있겠지만, 기자는 신이기보다 인간이어야만 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기자들에게 이들 인간적인 속성간에 균형을 잡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서도 잠깐 언급된 바 있지만 신문은 하루에 한두차례, 방송은 하루에도 여러차례 마감시간이 있다. 마감시간에 맞추기 위해 부족한 자료나마 그것만으로도 기사를 쓰지 않으면 된다.

또한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에 제약이 있어 기사를 크게 압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간단해보이는 사건이나 상황도 여러가지 요인이 얹히고 설켜 실제로는 지극히 복잡하게 마련인데 이를 원고지 몇 장에 나타내야만 한다. 표제는 그것을 불과 몇 마디로 압축해야 한다. 표제만을 대강 훑어보는 독자들이 많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이 표제에서 얻은 인상이 사실과 거리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신문이나 방송보도의 오보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사 1 건의 오보여부를 따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총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사속에서 다루어지는 인물이나 집단에게는 단 한건의 오보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독·시청자 즉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보의 산술적인 집계에 못지않게 구조적인 편향이 문제가 될 것 같다.

IV. 결어 : 관심의 추이

우리나라 언론의 주관심은 50년대와 60년대에는 언론의 자유에 있었다. 언론이 자유로워야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펼쳐서는 언론의 적극적인 자유 즉 「무엇을 위한 자유」가 강조되면서 언론의 책임 즉 사회발전과 국가목적실현을 위한 책임이 역설되었다. 언론이 자유로워야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책임스러워야 자유가 부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렸던 것 같다.

80년대에 들어서며 언론과 인권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인권중에서도 개인의 인격권에 초점이 주어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언론의 국가적·사회적 책임이 계속 강조되는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의 개인에의 책임이 아울러 강조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이 개인의 인격과 권익의 보호에 충실하게 되고, 그 범위가 점차 넓혀질 수 있을 때 사회에의 책임, 국민에의 책임에도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를 걸어본다.

(주)

1) 유재천, "한국언론의 보도성향과 인권침해", 「언론중재」, (1992년 봄), pp.23~24.

2) 이경자, "잡지보도와 시민의 권익", 「언론중재」 (1982년 봄), pp.56~58.

3) "6 월의 심의". 「신문과 방송」 (1982 년 7 월), No,139, pp.98~99.

4) Ibid ., pp.94~97.

5) 조갑제, "오보와 날조의 사례연구" (상)과 (하), 「마당」 (1982 년 6 월) pp.46~61 과 7 월 pp.138~149.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하와이대학교 대학원(매스컴사회학 박사)

- 저술 논문 「한국 언론인들의 역할관」, 「노동조합원들의 노조관」 외 다수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교수 및 대학원 교학과장